

기관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발췌본)

문화예술진흥기금

- 160. 예술창작 지원
- 161. 예술인력 육성
- 162. 국제예술교류지원
- 163. 지역문화예술지원
- 164.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예술창작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종합판정결과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정상추진
			√	√ (10%)	
판정결과	○ 예술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20%(보조율 80%)로 조정하고(개인예술가는 예외 인정), 이에 연동하여 보조금 규모 감축(2016년 10% 삭감)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 법령(문화예술진흥법)의 구속력이 충분하고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뚜렷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 이 사업은 순수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역군 조성을 위한 것이나,
 -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 내역사업은 2014년 기준 문학창작지원(32억원), 시각예술창작지원(46.33억원), 공연예술창작지원(420.99억원), 융복합예술지원(2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타당성은 인정됨

2.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규모가 크고 4개 예술분야의 다종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술단체의 다양한 압박도 존재하여 관리통제의 철저함이 가하여지기 어려운 측면도 발견되는 바, 불용액 발생, 지원규모 감액, 지원중단 등의 사례가 과거 발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관리 적정성이 충족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조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적 조건 충족 및 필수 자부담 능력을 적용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NCAS시스템관리 및 공유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정량적 검사 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정성적 평가나 사전·사후 현장점검 및 관리가 충분한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5년 현재 지난 시기 적폐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리 적정성을 기하려는 개선 노력이 인정됨

3. 규모의 적정성

3-1. 보조율의 합리성

- 보조율이 2013년 49.4%, 2014년 76.1%, 2015년 89.4%로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제246호)을 근거로 90%이하의 보조율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 불용액 발생 등 관리 적정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참여 예술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20%(보조율 80%)로 조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보조금 규모를 2016년 10% 삭감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문화예술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인예술가의 경우에는 자부담 의무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4년 5월)는 자부담 완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3-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 예술창작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가 일반이익보다 특수이익에 봉사하는 결과로 귀착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내역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덜어내고 합목적적 사업들로 재편하여 사업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특히 공연예술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지원 규모가 과다하므로 자율 조정을 통해 보조금 규모를 감축하고 참여 예술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4-1. 종합 평가

- 불용액 발생 등 관리 적정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참여 예술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20%(보조율 80%)로 조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보조금 규모를 2016년 10% 삭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연예술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지원 규모가 상당하므로 자율 조정을 통해 보조금 규모를 감축하고 참여 예술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문화예술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인예술가의 경우에는 자부담 의무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14년 5월)는 자부담 완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4-2. 정책 제언

- 예술창작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가 일반이익보다 특수이익에 봉사하는 결과로 귀착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내역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덜어내고 합목적적 사업들로 재편하여 사업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도록 합리화할 필요가 있겠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예술인력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종합판정결과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정상추진
					✓
판정결과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양성)에 의거한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 관련법의 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 취업률이 낮은 기초예술분야 전공졸업생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명확함
- 수혜자의 범위가 지역, 예술 장르를 안배하여 광범위함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 차세대예술인력, 문화예술기관 연수지원, 전문무용수지원 등 세부사업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타당함

2.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지원 실적 및 보조금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NCAS)에 입력하여 시스템으로 관리 및 공유하고 있음
-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지원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3-1. 종합 평가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양성)에 의거한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 차세대예술인력, 문화예술기관 연수지원, 전문무용수지원 등 세부사업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타당함

3-2. 정책 제언

-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정책 지원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국제예술교류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종합판정결과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정상추진
					√
판정결과	<p>○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1973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2011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을 고려했을 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4호에 의거, 동법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973년부터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 문화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우리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다양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관점을 가지고 세계의 여러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제시하고 있음
 - 민간영역에서 접근하기 힘든 국제 문화예술 우수 기관들과 협력 및 국내예술가들의 국제예술 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술가들의 자생적 창작환경 조성하려는 사업은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함
 -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이 되겠지만, 이들의 창작 역량 강화 등을 통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내역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세부사업을 설정하는 방식도 사업의 목적 달성에 체계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 실적 및 보조금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입력하여 시스템으로 관리 및 공유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 집행, 결과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단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3-1. 종합 평가

-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1973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2011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을 고려했을 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지역문화예술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종합판정결과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정상추진
					√
판정결과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 법령, 규칙 등과 보조사업의 연계성: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문화 예술창작 활성화 및 특성화,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예술가(단체)의 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목적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5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규칙 등의 내용이 사업내용과 일치: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는 동 보조사업의 지원 목적과 지정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구분	조항	조항 내용
기금 목적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
기금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기금 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기금관리 주체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3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등기, 정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령
	동법 시행령 제27조~34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평가 조사연구, 사업계획 승인 등
기금관리·운영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 관리·운영·구성 등
협의체 구성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	·협의체 참여 주체 ·협의체 구성 목적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 지역 문화진흥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무에 기반하고 있음. 국가책무 이행을 위한 보조사업인 지역문화예술진흥(지역+문화예술+특성화 및 균형 발전)에 목적이 있음
- 수혜자의 광범위성: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지역예술인 및 단체를 넘어 지역주민에 까지 영향을 미침

단계	수혜자	비고
1단계	지자체	지역 예술인(단체) 보호·육성
2단계	예술가(단체)	지역 예술인(단체)의 창작 활성화
3단계	지역 주민	예술 향유기회 확대, 예술 교육효과

-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혜택 전달의 명확성: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보조금의 전달경로(지자체 →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지역주민) 및 예술작품의 소비 경로(창작자 → 소비자) 측면에서 수혜자 구분, 수혜내용 및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음. 전달과정을 볼 때 혜택전달이 명확함. 단계별 혜택자 수는 다음과 같음

단계	수혜자	수혜자수	'12년	'13년	'14년
1단계	지자체	재정	16	16	17
2단계	예술가(단체)*	재정	4,874	4,494	4,475
3단계	지역 주민	비재정	8,155,193	7,742,340	10,710,282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사업에 따라 수혜자에게 재정 및 비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임
- 사업의 지속성 정도와 관련해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의 상존에 따른 국가 책무로서의 지속적 지원 필요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 보조사업의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특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개선 등 ” 중앙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하여 국가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임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음. 현재 지역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행정비용은 보조금의 5%범위 이내로 관리하고 있기에 보조금 규모

는 보조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정함

-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일반적 보조사업 전달체계가 아닌 기금관리 주체인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와 지역(지자체, 문화재단)의 상시적 협력에 의한 ‘지역협력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2.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가 법적으로 적합하고, 적정하며, 충분한 자부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법적 적합성 및 적정성이 있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조금에 지방비를 의무 매칭함에 따라 자부담 능력이 있음. 예술가(단체)는 단체의 법적 유형(법인, 임의단체 등)에 따라 법적 적합성과 적정성의 차이가 있음. 또한 자부담 능력도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자부담 능력의 확정 판단 불가)
-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조금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도(혹은 문화재단)의 보조사업 운영 전반(사업 계획 수립, 공모 및 지원심의, 평가 및 모니터링, 환류, 사업성과)에 관한 점검을 위해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시·도별 기금배분에 반영하고 있음
- 타사업과의 중복성: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및 민간문화재단 등과의 사업 중복성 여부를 검토·조정함. 정부부처, 유관기관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협의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유관기관이나 지역 문화재단과의 차별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보조사업의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방향 및 규모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있음

3. 규모의 적정성

3-1. 보조율의 합리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서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사업의 현행 보조율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협의 및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되었음. 현행 보조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재정여건, 수도권의 보조금 수요에 대한 지방의 책무 강조 및 사업여건이라는 관점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 50:50(단, 재정자주도 90 이상일 경우 33:66), 공연장상주사업 : 수도권은 50:50, 비수도권은 70:30
 -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은 비율기준이라는 점에서 절대액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3-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 대선 공약사항 이행계획 “문화재정 2% 달성” 을 위하여 지출규모 연차적 확대 추진, 국정과제인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13) 205억원 → ('18) 400억원 (195억원 증액) 추진
- 기금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18년까지 대폭증액에는 한계가 있음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4-1. 종합 평가

- 보조사업 사업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사업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 차원에서 타당성이 존재하며, 1차적 수혜자는 지역 민간예술단체, 예술인 등으로 명확하며,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명확히 전달되고 있음.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 운영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구성이 필요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판단됨. 선정절차와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중복여부와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4-2. 정책 제언

- 지역간 문화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지역간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더 많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배분 기준이 있으나 비율 중심으로 구성되어 절대액수 측면에서 지방이 불리한 기준임
-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증가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소요액의 합리적 계상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종합판정결과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정상추진
					√
판정결과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74년 이후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확산 및 창작·보급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금사용의 법적근거를 인정할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 문예창작 및 보급을 위한 공공재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민간의 기부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로서 기부금사업, 기업과 예술의 만남, 문화로 인사합시다와 같이 민간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범위는 명확하며, 국가보조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원로문예인복지지원의 경우 일몰제로서 소수의 고령문예인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는 점에서 핵심사업은 아니지만 지원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예정된 추진계획이 인정됨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 본 보조사업은 크게 기부활성화 업과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원로예술인 복지지원 이외에는 상당부분 민간 또는 제3센터에서의 자율적인 사업의 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및 일반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으로 일정 부분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2.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속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의 절차적 체계는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을 위한 기부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각 보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됨

3.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향후 민간분야의 참여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마중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바 현 시점에서는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하지만 1974년 이후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및 보조사업으로서 보다 명료한 추진체계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